

인천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나58728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나58728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3. 29 선고 2022가단1099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

담당변호사 백승배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우

변론 종결 2023. 11. 9.

판결 선고 2023. 12. 7.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3. 29. 선고 2022가단10995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F, G, K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F의 배우자로서 원고의 사위이다.

나. C는 1998. 12. 14.경 광명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피고에게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고 1999. 1.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는 2003.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70,000,000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C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이후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는데, 원고는 2009. 10.경 미국에 거주하는 G의 초청으로 이민을 갔다가 2010. 4.경 귀국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고, 원고는 2010. 4.경 귀국한 이후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는 2003. 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당시 시세인 100,000,000원보다 30,000,000원 저렴한 7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그 대신 원고가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게 하고,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을 원고에게 비밀로

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그런데 피고와 F는 원고에게, 원고가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게 하기로 하였다는 매매조건을 숨긴 채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팔아버렸다는 말만하여 원고로 하여금 미국으로 출국할 것을 부추겼다.

이에 원고는 2009. 10.경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나 미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2010. 4.경 귀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귀국한 이후에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제3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여 매월 450,000원의 월세 수입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게 하여야 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여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10년간 차임 상당액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차임 수령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3,000,000원 합계 6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3, 4,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C는 2015. 1. 16.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1156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15. 7. 28. 다음과 같은 이유로 C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즉, C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사실을 비밀로 하고, 원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토록 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피고가 F로 하여금 2004년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사실을 고지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C에게 위 비밀유지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

이에 C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2015나56079 사건에서 2015. 12. 10. "피고가 C에게 3,000,000원을 3회로 분할하여 각 1,000,000원을 지급하고, C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앞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약정의 체결 사실이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로 보기 어렵다.

나) 피고는, C가 2003. 6.경 피고 및 F에게 급히 돈이 필요해 이 사건 아파트를 급매로 넘겨야 한다며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 명의로 되어 있으니 피고가 70,000,000원에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피고는 부천시 원미구 L아파트 M호를 소유하고 있었고, 시흥시 N아파트 O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는바, C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굳이 매수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인다.

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이 기재된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사위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로도 원고를 계속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C와의 약정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2) 설사 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법률관계는 모두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2003. 6.경부터 2009. 10.경까지 약 6년 4개월간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그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인바, 원고가 귀국한 이후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원고를 거주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C가 원고의 주거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를 팔았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C를 불효자식이라고 생각하며 원망하며 살게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원고를 계속 거주하게 한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조건을 위반하여 원고를 미국으로 출국하게 하였고, 원고가 귀국한 후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내어주지 않고 원고로 하여금 좁은 원룸과 월세 방을 계속 전전하게 만들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6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F가 2004년경 원고에게 C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하였다고 알린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가 위 매도사실을 알린 것이 위법한 행위였다거나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부추겨 미국으로 출국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가 귀국한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에 원고를 거주하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권성우

판사이민영

판사박정운